

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| 7,272,917,228 | 218,187,517 |
| 일반회계 | 6,604,034,482 | 198,121,034 |
| 특별회계 | 668,882,746 | 20,066,482 |
| 기타특별회계 | 668,882,746 | 20,066,482 |
| 소방특별회계 | 292,790,312 | 8,783,709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314,308,231 | 9,429,247 |
|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| 10,818,367 | 324,551 |
|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| 9,452,883 | 283,586 |
|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| 2,386,807 | 71,604 |
|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| 37,421,176 | 1,122,635 |
|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| 1,704,970 | 51,149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,026,58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